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9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한과 위임사항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3.1.3. 개정·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기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2.10.18. 개정, '23.4.19. 시행 예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법 제28조제1항제9호(중소기업팩토링) 및 제10호(중전 9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규정 정비(안 제30조제1항)

다. 중소기업팩토링 심사 시 신용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제9호”를 각각 “제10호”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및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u></p> <p><u>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용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p>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및 <u>제9호</u>의 업무</p> <p>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u>제9호</u>의 업무</p> <p>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제7호 및 <u>제9호</u>의 업무</p>	<p>제30조(업무의 위탁) ① -----</p> <p>-----</p> <p>-----</p> <p>1.-----</p> <p>-----<u>제10호</u>-----</p> <p>2.-----</p> <p>-----<u>제10호</u>-----</p> <p>3.-----</p> <p>-----<u>제10호</u>-----</p>
<p>② (생략)</p> <p>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p>

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 2.~11. (생략)
- ② (생략)

- 1.-----

-----, 제9호 및 제10호-----

- 2.~11.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